

심 사 보 고 서

2002. 8. 2

산업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02. 7. 26
- 나. 제출자 : 서 산 시 장
- 다. 회부일자 : 2002. 7. 26
- 라. 상정일자 : 2002. 8. 2

2. 제안설명요지(제안설명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가. 개정이유

- 폐기물관리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토지·건물 등의 청결유지 책임제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의거 쓰레기 종량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에 대하여 정비·보완 개선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로 1개월의 범위내에서 명할 수 있는 규정과 단서조항으로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개월의 범위내에서 기간 연장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였으며 조치명령 대상범위는 제7항에서 1~4호까지로 정함(제8조제2항제7호).

- 청결유지 조치 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 완료일로부터 7일이내에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이내에 법제6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 규정을 정함(안 제8조2).
- 대형폐기물 납부필증을 현행 오천원이하의 소액권 위주에서 고액권(일만오천원)을 포함한 6종으로 하고, 스티커 형식을 새로이 정함(안 제9조제3항, 별표4, 별표5, 별표9).
- 쓰레기종량제 일반용 봉투의 무료제공 대상자중 단서규정으로 제3호 내지 제4호의 경우 수거지역에 한해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한 신청자에게만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함(안 제17조1항).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된 토지·건물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청결유지 책임제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였으며,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2001. 12)에 의거 그동안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정비·보완 개선하여 현실에 맞게 규정하는 것으로써
- 토지·건물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청결유지를 명할 수 있는 규정과 이행기간 불이행시 과태료 처분 규정을 두었으며 대형폐기물 납세필증을 현행 4종에서 6종으로 개정 세분화하여 주민들의 생활에 편익을 도모하였으며,
- 서산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쓰레기봉투는 생분해성 봉투로써 매립후 3개월 정도가 되면 봉투가 붕괴되면서 쓰레기가 빨리 썩게되는 봉투이며 일반봉투보다 제작비가 3배가 비싸게 제작되고 있으며, 현재 봉투 수수료 자립도 목표치에 13.6%에 불과하여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2003년도까지 현실적 100% 인상이 불가하나 주민부담과 물가 상승을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현실화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됨.

4.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 및 소수의견 : 없었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서산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서산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제17조 제1항 별표10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중 전용수거용기사용중 공동주택란을 별지와 같이 하고 주)내용중 4번을 삭제하고 5번을 4번으로 한다.

※ 수정안 대비표 별첨

[별표10]

원 안			개 정 안			수 정 안		
수집범	구 분	수량 산출기준	수집범	구 분	수량 산출기준	수집범	구 분	수량 산출기준
전용부 사 용	단독주택 공동주택 (전용수거용기 사용 채거지역)	쓰레기일인용부투 판매가격×0.5	전용부 사 용	단독주택 공동주택 (전용수거용기 사용 채거지역)	쓰레기일인용부투 판매가격	전용부 사 용	단독주택 공동주택 (전용수거용기 사용 채거지역)	쓰레기일인용부투 판매가격
전용수거 용기 사용	분양면적 3㎡이하 3㎡이상과 분양면적 3㎡이하	매월 A×5인×30일×B×0.8	전용수거 용기 사용	공동주택 3㎡이하	매월 A×5인×30일×B÷0.8	전용수거 용기 사용	공동주택	매월 A×3인×30일×B÷0.8
	의무사업장	매월 1일배출량×30일×C×0.8		의무사업장	매월 1일배출량×30일×C÷0.8		의무사업장	매월 1일배출량×30일×C÷0.8
주 1 A 음물류투를 잔량인 1인일 배출량 B 쓰레기투투값 10당 단가 C 의무사업장 음물류투를 수집·운반·처리 10당 단가			주 1 A 음물류투를 잔량인 1인일 배출량 B 쓰레기투투값 10당 단가 C 의무사업장 음물류투를 수집·운반·처리 10당 단가			주 1 A 음물류투를 잔량인 1인일 배출량 B 쓰레기투투값 10당 단가 C 의무사업장 음물류투를 수집·운반·처리 10당 단가		
2 용량과 무게 환산율: 1ℓ = 0.8kg 3 부과기준: 1개월 30일 기준 4 아파트 평형기준 가 30평이하는 세대는 5인 기준 나 30평이하 해하는 세대는 4인 기준			2 용량과 무게 환산율: 1ℓ = 0.8kg 3 부과기준: 1개월 30일 기준 4 아파트 평형기준 가 30평이하는 세대는 5인 기준 나 30평이하 해하는 세대는 4인 기준			2 용량과 무게 환산율: 1ℓ = 0.8kg 3 부과기준: 1개월 30일 기준 <삭 제>		
5 전용수거용기 사용할 때 수료 산출액의 10%만 면은 정사			5 전용수거용기 사용할 때 수료 산출액의 10%만 면은 정사			4 전용수거용기 사용할 때 수료 산출액의 10%만 면은 정사		

의안번호	제3호
의결 년월일	2002. . (제회)

서산시 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출자	서산시장
제출년월일	2002년 9월 26일

서산시 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호
----------	-----

제출년월일 : 2002. 7. 26.

제 출 자 : 서산시장

□ 改正理由

- 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된 토지·건물등의 청결유지책임제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반영하고, 환경부 쓰레기수수료종량제시행(2001.12)에 따라 쓰레기종량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들을 보완하고자 함.

□ 主要骨子

-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주어진 청결의무 책임의 이행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정하여, 토지·건물내에서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자 함.
(안 제8조제2항, 안 제8조제7항, 안 제8조의2)
- 종전 쓰레기수수료종량제 시행지침('99.12)이 폐지되고 봉투수수료자립도 목표치인 "연도별자립도"가 현실과 맞지 않아 폐지하고자 함.
- 쓰레기봉투가격 산정시 재활용품 수거비용, 가로청소비용 등 공공성격의 비용을 제외한 봉투가격 산정방식을 채택 (별표8)
 - 최종판매가격 : l 당 처리비용 \times 봉투용량(l) \times 주민부담율(목표치) + 봉투제작비 + 판매수수료
 - 판매수수료 : $((l$ 당 처리비용 \times 주민부담율+봉투제작비) \times 판매수수료 요율 \div (1 -판매수수료 요율)
- 날로 다양해지는 가구·가전제품의 대형폐기물 품목을 현실에 맞게 세분화하고, 대형폐기물수수료 납부필증을 현행 오천원이하의 소액권 위주에서 고액권(일만오천원)을 포함한 6종으로 스티커 형식을 새로정함 (별표4, 별표5, 별표9)

□ 參考事項

○ 관련근거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6조제2항, 제7조제3항
- 환경부 쓰레기수수료종량제 시행지침 (2001. 12)

서산시 폐기물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산시 폐기물관리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시장은 법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법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1개월의 범위내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개월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 대상행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건물에서 페드럼통 등 장치를 설치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또는 노천소각 및 연소잔재물 등을 방치하는 행위
4. 기타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정하는 경우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청결유지 이행) ①제8조제2항 규정에 의한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완료일로부터 7일이내에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제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대형폐기물수수료 납부필증은 6종(일천원권, 이천원권, 오천원권, 팔천원권, 일만원권, 일만오천원권) 으로 하고 재질은 얇은 종이로 하며, 색깔은 종류별 각각 다른 색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의 단서들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3호내지제4호의 경우 수거지역에 한해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신청자에게만 지급할 수 있다.

별표4의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5의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8의 2를 삭제 한다.

별표8의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9의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10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4]

2.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종류 및 규격(제9조제3항관련)

종 류	규격(가로×세로)	바 탕 색	글 씨
1,000원권	18cm×14cm	연두색	검정색(고딕), 시마크는 녹색
2,000원권	18cm×14cm	분홍색	“
5,000원권	18cm×14cm	하늘색	“
8,000원권	18cm×14cm	노란색	“
10,000원권	18cm×14cm	빨강색	“
15,000원권	18cm×14cm	파랑색	“

※ 배출자가 시에서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별표5]

2.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의 제작설명서

The diagram illustrates two versions of a large waste fee receipt form, each measuring 9cm in width and 12cm in height. The top section of each form is 2cm high and contains the document number and issuer information. The middle section contains the '대형폐기물 처리 센터' logo and the issuer's name. Below this are checkboxes for the issuer and the date. A box for '배출품목' (item description) is provided. The bottom section contains two notes: one about the receipt being a carbon copy and another about the fee standard. The form is signed by '서산시장' (Seosan Market).

종 별	1 종	2 종	3 종	4 종	5 종	6 종
색 상	연두색	분홍색	하늘색	노란색	빨강색	파랑색

※ 글씨는 검정(시마크는 녹색),

[별표8]

3. 쓰레기봉투의 공급 또는 판매가격

용량별	일 반 용 봉 투	비 고
5 ℓ	ℓ 당처리비용 × 봉투용량(ℓ) × 주민부담율(목표치) + 봉투제작비 + 판매수수료	
10 ℓ		
20 ℓ		
50 ℓ		
100 ℓ		

* 주) 1. 십원단위로 절상

2. 주민부담율 = (총 봉투판매금액+무상지급봉투, 공공용봉투 사용량을 판매금액으로 환산한 금액) ÷ (주민이 배출한 혼합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비용+무상지급 봉투 및 공공용봉투 쓰레기운반·처리비용+재활용품 분리선별후 발생된 쓰레기 운반·처리비용)

[별표9]

1.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의 기준 (제2조, 제6조 및 제15조 관련)

종별 구분	1종 (15,000원)	2종 (10,000원)	3종 (8,000원)	4종 (5,000원)	5종 (2,000원)
품	장롱(120cm) 피아노(그랜드) 물 탱크(다세대 주택 옥상 FRP, PVC재질) 복사기	장롱(90cm) 피아노(어프라이트) 보일러	냉장고(400ℓ 이상) 에어콘(스텐드형) 온풍기 욕조 옷장(어린이용) 침대틀(1,2인용) 양변기 풍금(올겐)	냉장고(400ℓ 미만) 에어콘(걸이형) 쇼파(3인용) 책상 화장대 응접탁자 서랍장 캐비닛 식탁 파일박스 장식대 카펫트 TV(모니터포함) 컴퓨터(본체,모니터, 키보드일체) 상(5인이상) 세탁기 가스오븐렌지 런닝머신 침대(1,2인용) 매트리스	쇼파(1인용) 신발장 오디오(본체) 스피커 선풍기 가스렌지 문틀(문짝) 의자, 쌀통 밥통, 싱크대 공기청정기 수족관 탈수기 자전거 청소기 프린터, 비디오 상(4인이상) 책꽂이 거울, 가습기 팩스기기 전자렌지 세면대 컴퓨터(모니터만) 액자, 유리창 문갑(소)
명					

- 비고 1. 깨진유리나 사기등의 잡쓰레기는 소형 마대로 담아 배출토록 안내
 2. 장롱, 식탁등을 절단하여 한아름의 나무류음으로 배출시 5종(2,000원)적용
 3. 위 품목에 포함되지 아니한 대형폐기물은 폐기물의 용도 및 크기에 따라 유사 품목에 준한다.

[별표10]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제15조관련)

수집방법	구 분		수수료 산출기준
전용봉투 사 용	단독주택, 공동주택 (전용수거용기 사용제외지역)		쓰레기일반용봉투 판매가격
전용수거 용기사용	공동주택	분양면적 31평초과	매월: $A \times 5인 \times 30일 \times B \div 0.8$
		분양면적 31평이하	매월: $A \times 4인 \times 30일 \times B \div 0.8$
	의무사업장		매월: $1일배출량 \times 30일 \times C \div 0.8$

- 주) 1. A: 음식물류폐기물 전국평균 1인1일 배출량
 B: 쓰레기봉투값 1ℓ 당 단가
 C: 의무사업장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1ℓ 당 단가
 2. 용량과 무게 환산율 : 1ℓ = 0.8kg
 3. 부과기준 : 1개월(30일기준)
 4. 아파트 평형기준
 가. 31평초과하는 세대는 5인기준
 나. 31평까지 해당하는 세대는 4인기준
 5. 전용수거용기 사용할 때 수수료 산출액의 100원미만은 절사

□ 신.구조물 대조표

현행	개정안
<p>제8조(생략)① (생략)</p> <p>②시장은 법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청소를 실시하게 하거나 위해의 제거 또는 청결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p> <p><신설></p>	<p>제8조(현행과 같음) ① (현행과 같음)</p> <p>② 시장은 법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법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1개월의 범위내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개월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⑦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 대상 행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건물에서 페드럼통 등 장치를 설치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또는 노천소각 및 연소잔재물 등을 방치하는 행위 4. 기타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별표4]

현 행				개 정 안			
2. 쓰레기봉투의 규격 및 용도 (제9조제3항관련)				2.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종류 및 규격 (제9조제3항관련)			
종류	크기	바탕색	글씨	종 류	규격 (가로×세로)	바탕색	글 씨
1,000원권	가로10cm×세로15cm	연두색	고덕체검은색	1,000원권	18cm×14cm	연두색	검정색(고덕), 시마크는 녹색
2,000원권	“	하늘색	“	2,000원권	18cm×14cm	분홍색	“
3,000원권	“	노란색	“	5,000원권	18cm×14cm	하늘색	“
5,000원권	“	빨간색	“	8,000원권	18cm×14cm	노란색	“
※ 배출자가 시에서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10,000원권	18cm×14cm	빨강색	“
				15,000원권	18cm×14cm	파랑색	“
				※ 배출자가 시에서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별표5]

현 행
2.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의 제작설명서
서산 제00000호
대형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width: fit-content; margin: 0 auto;">금0000원 권</div>
품 명 :
규 격 :
배출지주소 : 서산시 읍·면·동 리·통 번지
배출자성명 :
배출일자: 년 월 일
서 산 시 장 (인)

[별표5]

개 정 안	
2.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의 제작설명서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서산 제 호</p> <p style="text-align: center;">배 출 자 보 관 용 (판매입소명:)</p> <hr/> <p style="text-align: center;">대형폐기물 처리 스티커 서산시</p> <p style="text-align: center;">금이천원권 (금 2,000원)</p> <p><input type="checkbox"/> 배출자: _____</p> <p><input type="checkbox"/> 배출일: 년 월 일</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80%; margin: 10px auto; text-align: center;">배출품목</div> <p>※ 분실우려가 있으니 수거시까지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수수료 기준에 맞게 구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서 산 시 장</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서산 제 호</p> <p style="text-align: center;">배 출 자 무 착 용 (판매입소명:)</p> <hr/> <p style="text-align: center;">대형폐기물 처리 스티커 서산시</p> <p style="text-align: center;">금이천원권 (금 2,000원)</p> <p><input type="checkbox"/> 배출자: _____</p> <p><input type="checkbox"/> 배출일: 년 월 일</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80%; margin: 10px auto; text-align: center;">배출품목</div> <p>※ 분실우려가 있으니 떨어지지 않게 부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수수료 기준에 맞게 부착하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서 산 시 장</p> </div>
9cm	9cm

종 별	1 종	2 종	3 종	4 종	5 종	6 종
색 상	연두색	분홍색	하늘색	노란색	빨강색	파랑색

※ 글씨는 검정(시마크는 녹색)

[별표8]

현 행			개 정 안		
3. 쓰레기봉투의 공급 또는 판매가격			3. 쓰레기봉투의 공급 또는 판매가격		
용량별	일반용 봉투	비 고	용량별	일반용 봉투	비 고
5ℓ	ℓ 당 처리비용×봉투용량(ℓ)× 당해연도자립도+봉투제작비+ 판매이윤	※단 음식물용 및 소각용은 산정가격의 1/2로 한다.	5ℓ	ℓ 당처리비용×봉투용량(ℓ)×주민부담 율(목표치)+봉투제작비+판매수수료	
10ℓ					
20ℓ					
50ℓ					
100ℓ					
(주) 십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 주) 1. 십원단위로 절상 2. 주민부담율 = (총 봉투판매금액+무상지급봉투, 공공 용봉투 사용량을 판매금액으로 환산한 금액)÷(주민이 배출한 혼합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비용+무상지급 봉투 및 공공용 봉투 쓰레기운반·처리비용+재활용품 분리선 별후 발생된 쓰레기 운반·처리비용)		

[별표9]

현 행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다량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1.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의 기준(제2조, 제6조 및 제15조 관련)

품 명	규 격	기 준	수 수 료 (원)		
			계	수집운반비	처리비 (반입료)
냉 장 고	500ℓ 이상 300ℓ 이상 300ℓ 미만	개	8,000	4,800	3,200
			6,000	3,600	2,400
			4,000	2,400	1,600
텔레비전	42인치 이상	개	5,000	3,000	2,000
	42인치 미만		3,000	1,800	1,200
세탁기	모든 규격	개	4,000	2,400	1,600
에어콘	264㎡형 이상	개	8,000	4,800	3,200
	66㎡형이상~264㎡미만		5,000	3,000	2,000
	66㎡형 미만		3,000	1,800	1,200
가스오븐렌지	높이 1m 이상	개	4,000	2,400	1,600
	높이 1m 미만		2,000	1,200	800
탈수기	모든 규격	개	2,000	1,200	800
공기청정기	높이 1m 이상	개	2,000	1,100	900
	높이 1m 미만		1,000	600	400
장농	120cm장 1쪽	조	15,000	9,000	6,000
	90cm장 1쪽		10,000	6,000	4,000
소파	대형 6인용	조	8,000	6,400	1,600
	소형 4인용		5,000	3,000	2,000
서랍장	5단 이상	조	4,000	2,400	1,600
	4단 이하		2,000	1,200	800
책상	양수, 대형	개	5,000	3,000	2,000
	변수, 소형		4,000	2,400	1,600
식탁	6인용 이상	개	5,000	3,000	2,000
	6인용 미만		4,000	2,400	1,600
피아노	어프라이트	개	10,000	6,000	4,000
	그 랜 드		15,000	9,000	6,000
침대	2인용	개	8,000	6,400	1,600
	1인용		5,000	3,000	2,000
문갑	모든 규격	개	3,000	1,800	1,200

※ 상기의 품목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비슷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한다.

[별표9]

1.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의 기준 (제2조, 제6조 및 제15조 관련)

종별 구분	1종 (15,000원)	2종 (10,000원)	3종 (8,000원)	4종 (5,000원)	5종 (2,000원)
품	장롱(120cm) 피아노(그랜드) 물 탱크(다세대 주택 옥상 FRP, PVC재질) 복사기	장롱(90cm) 피아노(어프라이트) 보일러	냉장고(400ℓ 이상) 에어콘(스탠드형) 온풍기 욕조 옷장(어린이용) 침대틀(1,2인용) 양변기 풍금(울젠)	냉장고(400ℓ 미만) 에어콘(걸이형) 쇼파(3인용) 책상 화장대 응접탁자 서랍장 캐비넷 식탁 파일박스 장식대 카펫트 TV(모니터포함) 컴퓨터(본체,모니터, 키보드일체) 상(5인이상) 세탁기 가스오븐렌지 런닝머신 침대(1,2인용) 매트리스	쇼파(1인용) 신발장 오디오(본체) 스피커 선풍기 가스렌지 문틀(문짝) 의자, 쌀통 밥통, 싱크대 공기청정기 수족관 탈수기 자전거 청소기 프린터, 비디오 상(4인이상) 책꽂이 거울, 가습기 팩스기기 전자렌지 세면대 컴퓨터(모니터만) 액자, 유리창 문갑(소)
명					

- 비고 1. 깨진유리나 사기등의 잡쓰레기는 소형 마대로 담아 배출토록 안내
 2. 장롱, 식탁등을 절단하여 한아름의 나무묶음으로 배출시 5종(2,000원)적용
 3. 위 품목에 포함되지 아니한 대형폐기물은 폐기물의 용도 및 크기에 따라 유사 품목에 준한다.

[별표10]

현 행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제15조관련)			
수집방법	구 분	수수료 산출기준	
전용봉투 사 용	단독주택, 공동주택 (전용수거용기 사용제외지역)	쓰레기일반용봉투 판매가격 × 0.5	
전용수거 용기사용	공동주택	분양면적 31평초과	매월: $A \times 5인 \times 30일 \times B \times 0.8$
		분양면적 31평이하	매월: $A \times 4인 \times 30일 \times B \times 0.8$
	의무사업장		매월: 1일배출량 × 30일 × C × 0.8
<p>주) 1. A: 음식물류폐기물 전국평균 1인1일 배출량 B: 쓰레기봉투값 1ℓ 당 단가 C: 의무사업장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1ℓ 당 단가</p> <p>2. 용량과 무게 환산율 : 1ℓ = 0.8kg</p> <p>3. 부과기준 : 1개월(30일기준)</p> <p>4. 아파트 평형기준 가. 31평초과하는 세대는 5인기준 나. 31평까지 해당하는 세대는 4인기준</p> <p>5. 전용수거용기 사용할 때 수수료 산출액의 100원미만은 절사</p>			

[별표10]

개 정 안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제15조관련)			
수집방법	구 분	수수료 산출기준	
전용봉투 사 용	단독주택, 공동주택 (전용수거용기 사용제외지역)	쓰레기일반용봉투 판매가격	
전용수거 용기사용	공동주택	분양면적 31평초과	매월: $A \times 5인 \times 30일 \times B \div 0.8$
		분양면적 31평이하	매월: $A \times 4인 \times 30일 \times B \div 0.8$
	의무사업장		매월: $1일배출량 \times 30일 \times C \div 0.8$
<p>주) 1. A: 음식물류폐기물 전국평균 1인1일 배출량 B: 쓰레기봉투값 1ℓ 당 단가 C: 의무사업장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1ℓ 당 단가</p> <p>2. 용량과 무게 환산율 : 1ℓ=0.8kg 3. 부과기준 : 1개월(30일기준) 4. 아파트 평형기준 가. 31평초과하는 세대는 5인기준 나. 31평까지 해당하는 세대는 4인기준 5. 전용수거용기 사용할 때 수수료 산출액의 100원미만은 절사</p>			